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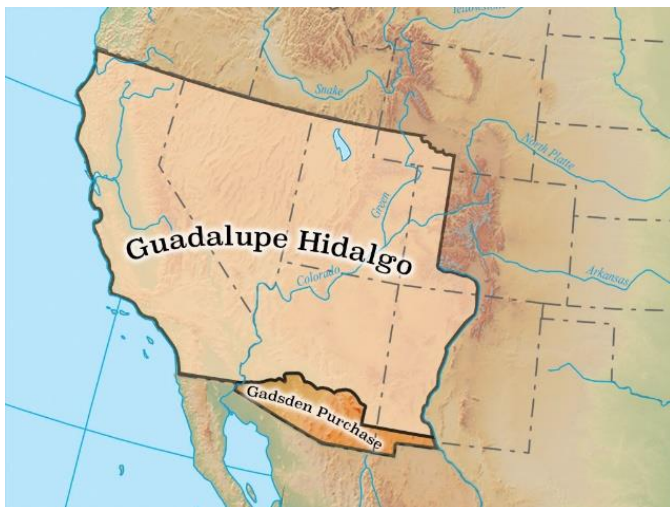
1. Pious Fund of the Californias 사건

(USA v. Mexico, 1902. 10. 14. 판결)

가. 사건 개요 및 배경

이 사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천주교회에게 멕시코 정부가 연금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던 중재 판정이 선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.

캘리포니아 Pious Fund 는 현재 미 캘리포니아주와 멕시코의 캘리포니아 반도에 있는 천주교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 1697 년 설립된 재단으로서 제수이트(Jesuit) 교단이 관리하고 있었다. 당시 이 지역은 모두 스페인의 식민지였다. 제수이트 교단이 1768 년 스페인 국왕 찰스 3 세의 칙령에 의해 멕시코에서 추방되자 재단 기금은 스페인이 관리하다 1821 년 멕시코 독립과 함께 멕시코 정부에게 이관되었다. 1836 년 멕시코의 청원에 따라 교황청은 북부 캘리포니아(현재 미국의 캘리포니아주)에 새로 주교구를 설치하였고 멕시코는 재단 기금을 주교에게 이전하였으나 1842 년 다시 회수하고 이 지역 천주교 교회에게 재단 기금의 연리 6%를 매년 연금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. 미국과 멕시코는 영토 문제로 1846 년~48 년간 전쟁을 치른 후 1848 년 Guadalupe



Hidalgo 조약을 체결하여 종전하면서 북부 캘리포니아는 미국에 할양되었다. 멕시코는 전쟁 후 미국 영토가 된 북부 캘리포니아 소재 교회에게 재단 연금금을 지급하지 않았다. 미국과 멕시코는 Hidalgo 조약 이후 발생한 양국 국민의 상대방 정부에 대한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1869 년 공동 청구권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였다. 이 위원회에 캘리포니아 교회 대표는 1848 년부터

1869 년 기간 수령하지 못한 재단 연금금 지불을 청구하였으나 공동 심의 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위원회 의장이었던 당시 주미 영국 대사 Edward Thornton 에게 판정을 의뢰하였다. Edward Thornton 대사는 심리 후 1842 년 당시 재단 기금 총액은 140 만 멕시코 달러, 미지급 기간(1848 년~1869 년) 중의 6% 이자 합계는 180 만 멕시코 달러가 된다고 계산한 후 그 절반인 90 만 멕시코 달러를 멕시코 정부가 미 캘리포니아 교회에게 지불하라고 판정하였다.

멕시코 정부는 Thornton 의 중재 판정이 1869 년 이후의 연금금 지불 의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1869 년 이후에도 멕시코 정부의 연금금 지불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시비하였다. 캘리포니아 교회를 대신하여 미국 정부는 멕시코와 협상하였으나 해결에 이르지 못하자 1902 년 5 월 이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다. Thornton 의 1875 년 중재 판정이 1869 년 이후 연금금 지불에 대해서도 선례로서의 구속력(*res judicata*)이 있는지 판정하여 달라는 것이었다.

나. 주요 쟁점 및 판결

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분쟁이 국제 조약과 국제법 원칙에 의거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국제 분쟁이라고 확인한 후 *res judicata* 원칙은 국내 법원뿐 아니라 국제 중재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. 1868 년 양국의 합의로 설치된 공동 청구 심의 위원회도 *res judicata* 의 원칙이 적용되는 국제 중재이며 PCA 에 청구된 이 사건의 당사자와 분쟁 대상이 1875 년 Thornton 판정과 동일한 점을 감안할 때 Thornton 판정은 이 사건에 대해 선례로서의 구속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. 판정부는 멕시코가 Thornton 판정대로 1848 년부터 1869 년 기간 중의 연금금을 지불하였으나 1869 년부터는 지불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일한 지불 의무가 1869 년부터 계속 존재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지난 33 년간 지불하지 않은 연금금 총액이 142 만 멕시코 달러에 달한다고 계산한 후 멕시코는 이 미지급 총액을 지불하고 정상적인 연금금 4 만 3 천 멕시코 달러를 1903 년부터 매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(판정문 page 3).

(작성자 :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)